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4. 4.(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3차 및 제1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 (2018-16-109)**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이라 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말기유통법이 개정되어 금년 5월 22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2월 21일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2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의뢰하고 받았으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안 제6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별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는 안 [별표 2] 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 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별칙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는 고시안 안 제3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긴급중지 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 제5항 위반에 관한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을 안 제2조제7호로 신설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4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이동통신사업자가 USIM 판매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이용자 이익을 향상시킨 법률이 지난 1월에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 이후의 후속작업으로 시행령과 세부 기준, 또 업무처리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 주문에 동의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경식 사무처장

- 그 전에 저번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그 이행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8년 제5차 위원회에서 지난 1월 24일 의결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06억원 부과와 관련된 이행점검을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고 그 점검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3사 모두 과징금을 3월 19일에 납부했고, 재발방지 이행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으며, 금년 4월 말까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하는 표준협정서에 부당한 차별적 장려금 제안 및 지급 금지규정을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지금 나누어드렸던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용자정책국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추가적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공영방송을 걱정하는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KBS가 사장 청문회를 마치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고,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과거에 제기됐던 의혹을 다시 들춰내는 <추적 60분>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서 사상자 유족회, 또 참전용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의도를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어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이 바뀐 MBC도 역시 걱정입니다.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북한의 선군정치의 의미를 묻는 이런 엉뚱한 문항이 출제되어서 이념을 같이 하는 응시자만 합격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BC 감사국이 노조파업에 불참한 임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불법사찰로 검찰에 고발되는 심각한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인격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MBC에는 노조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보직과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이 보도국 80여명을 포함해서 모두 140명이 넘고, 또 해외특파원도 결국 전원 소환을 당해서 가족들도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KBS나 MBC 모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로 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공영방송이 정권에 편들고 코드를 맞춘 적폐였다며 이사장과 사장을 끌어내리고 경영진을 개편한 목적이 결국 이런 것이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본분을 다하고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우리 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에서는 당장 MBC 감사국 이메일 불법사찰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고,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 회복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그리고 불평부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방송사의 프로그램 아이템 선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편성의 자유, 방송과 보도의 자유,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이나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오류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면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 확인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MBC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과거 MBC 사측 경영진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석진 위원님께서서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측 입장은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김석진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파악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내에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MBC 감사국 사내 이메일 열람 건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장께서 사무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그것에 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마 MBC 감사실에서 방문진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게, MBC에 대한 직접 감사권이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방문진이 가지고 있는 감독권에 의해서 방문진에 보고가 되면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이사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와 관련해서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들은 지난 정부에서 MBC 직원들에 대한 탄압, 부당노동 행위 그리고 사측과 정치권력과의 권언 유착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감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수단도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그동안 의심만 가졌던 사안들이 사실로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임원회의에서 공공

연하게 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MBC에서 수사 의뢰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제3기 방통위에서도 MBC 경영진들의 그러한 일방적인 회사 운영, 편파보도, 노동탄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시 계속해서 제가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을 열어본 것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제기했던 사측의 불공정 보도행위 그리고 노동탄압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 이번 감사의 본질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MBC에서 방문진에 보고된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4월 5일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에 관련된 증거자료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휴대폰도 다 파기되고 문서들도 파쇄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사내 메일이고 사내 메일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과거 법원에서 법원행정처 PC를 열 때처럼 일종의 키워드 리스트로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참여하게 하고, 담당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실 인원을 복수로 뒤서 오해가 없도록 했다는 나름의 법적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여부에 관련해서도 방문진에 보고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다 면밀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저희가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신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영방송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근 휴대폰 사기판매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용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은 사안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 봐야 되는데 이번 휴대폰 사기 판매 건 같은 경우 어제까지 대략 확인된 것이 800건 정도 됩니다. 피해자만 800명이 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 통신 3사를 불러서 점검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공개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는 안 됐겠지만 어제까지 꼼꼼히 점검하셨기 때문에 구두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 결과 이후에 우리가 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도 발령을 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프리미엄 단말기 값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 처리해 주겠다고 했고, 개통 과정에서 보면 스캐너가 여권을 읽지 못한다는 맹점을 노렸습니다. 지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즉, 이통사들의 판매점 관리 감독 책무, 그리고 판매원 교육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일부 판매원들이 이용자들에게 사기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판매원들과 사기당한 이용자들 간의 관계로만 규정할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이나 이통사들의 판매점, 판매원 관리감독 책무를 다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우리의 권한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통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을 텐데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회의한 내용들을 더 검토해 주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상 불법지원금 지급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이통사나 대리점에 대해 구제해 주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통사나 대리점이 피해자에게 거래조건에 따라서 이용자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 판단 하에 일정 정도 보상피해 구제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통 3사에서 공통적으로 개통 후 14일 이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단말기 반납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개통 취소, 할부금 미부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업자 별로 다른 대책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리점이 판매점에 사기당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했던 장려금 회수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어제 2시경에 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자 휴대폰 개통 사기 사건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 대금 사기 주의보'를 어제 긴급하게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인터넷신문, 그다음에 어제 저녁 MBC, SBS 등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신분증을 송부하라는 형태로 해서 기기변경하고 기기변경 즉시 다시 또 취소하고 재기변해서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 많은 판매점에 대해서 특별 실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진본이 아닌 컬러 복사된 위·변조된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도 현재

모바일 스캐너가 인식을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저희가 판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스캐너는 과거의 일반 스캐너였습니다. 일반 스캐너는 스캔은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보시면 스캐너가 있는데 금융기관은 위·변조를 식별하는 스캐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2016년 거의 말경에 일반 스캐너가 아닌 위·변조 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스캐너를 이동통신사의 비용으로 판매점에 우선 보급하고 보조금 10만원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부분 유통점, 판매점에는 위·변조 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스캐너가 다 보급됐고 지금 90% 이상 다 스캐너를 통해서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방문판매하는 직원이 유선 스캐너를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을 스캔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하는 경우에는 위·변조 식별기능이 없습니다.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위·변조 식별기능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단계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휴대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분증 위·변조 식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개선 가능한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방문판매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는 바로 본인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기 때문에 신분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직접 면전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을 컬러로 복사해서 불법적으로 송부 받아서 불법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통사와 이통사 대리점 등이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관할이긴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날리는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아까 고삼석 위원도 지적 하셨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제도적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경고도 내리시고 이통사들과 잘 협의해서 또는 대리점들과 잘 협의해서 이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추가적인 논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대내외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09시 57분 폐회 】